

위탁용역 신용평가 발급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라 한다)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인 NICE평가정보(주)(이하 ‘NICE’라 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KOCCA’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NICE’의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협약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서비스’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요구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서비스’를 말한다.

- ② ‘신청사’란 ‘KOCCA’의 위탁용역사업 관련 입찰참가를 희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법인회사를 말한다.
- ③ ‘예비진단’이란 ‘신청사’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기업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는 분석결과를 말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① 신용평가 서비스 관련 ‘KOCCA’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KOCCA’의 신용평가 대상 위탁용역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사’에 대한 ‘서비스’ 홍보를 지원하고, ‘신청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NICE’와 협력한다.

- ② 신용평가 서비스 관련 ‘NICE’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신청사’의 서비스 가입, 승인, 변경, 해지 등 ‘서비스’ 운영에 관한 모든업무
 - ‘서비스’와 관련된 ‘신청사’의 문의에 대한 상담 응대업무 등
 - ‘신청사’가 신청한 ‘서비스’에 대하여 표준 수수료의 40% 할인된 수수료 책정 및 ‘예비진단’ 무상 제공

(부가세 포함, 단위:원)

구 분	기업규모	표준 수수료	할인율	적용 수수료
예비진단	개인기업	110,000	100%	무료제공
	일반법인			
	외감법인			
공공 입찰용 신용평가 서비스	개인기업	220,000	40%	132,000
	일반법인	385,000		231,000
	외감법인	550,000		330,000

- ③ ‘서비스’는 ‘NICE’가 ‘KOCCA’의 홈페이지 링크 연결을 통해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NICE’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홍보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며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신청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⑤ ‘NICE’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KOCCA’의 관리자용 사이트를 제공한다.
- ⑥ ‘KOCCA’와 ‘NICE’는 협의에 의해 신규 서비스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제2항 제5호의 할인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① ‘NICE’는 ‘신청사’가 서비스를 이용/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② ‘NICE’는 ‘신청사’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NICE’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서비스의 불만, 피해,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③ ‘NICE’는 본 협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신청사’에 대한 어떠한 영업 및 마케팅활동을 할 수 없으며, ‘NICE’ 사이트의 회원정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NICE’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상호의무) ① ‘KOCCA’와 ‘NICE’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상호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② 협약기간에 상관없이 ‘KOCCA’와 ‘NICE’는 본 협약서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정보, 신용정보 또는 회원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당사자가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③ 협약기간에 상관없이 ‘KOCCA’와 ‘NICE’는 제휴업무 수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정보,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영업상 또는 다른 협력관계를 생성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고, 쌍방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KOCCA’와 ‘NICE’는 상대방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협약의 해지 통보를 한 후 30일 이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면책사항) ‘NICE’는 ‘KOCCA’ 및 ‘신청사’가 본 협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결과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기타사항) ①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② 본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는 ‘콘텐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기간 중에도 ‘NICE’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협약의 성립과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9년 3월 29일

(KOCCA)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35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인)



(NICE)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4
NICE 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의영(인)

